

## 반론권행사의 실제

-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양 건

송전대 법학과교수

..... 반론권제도가 갖는 의미도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 있어서 언론의 개인에 대한 침해는 주로 사생활에 관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반론권제도는 대단히 무력한 방어수단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다.....오늘날 반론권제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주로 미국에서나 논의되고 있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일종으로서가 아닐까 생각된다.....다시 말하면, 매스·미디어를 갖지 못한 시민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들려줄 권리」(the right to be heard)라는 점에서 반론권내지 액세스권의 현대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반론권에 대한 평가는 각국의 언론자유의 발전의 단계에 따라 달라진 수 밖에 없다.....

### 1. 머리말

반론권(droit de response, Gegendarstellungsrecht, right of reply)이라는 말은 다의적인 개념이며, 그 구체적 내용이나 성격은 각국의 제도에 따라 상이하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반론권이란,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기사 등에 의하여 비판, 공격, 기타의 피해를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을 게재(또는 방송)하도록 당해 미디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래적 반론권은 프랑스에서 1822년, 대혁명후의 정치적 혼란기에 처음 입법화되어 그 후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었는데, 그 기본적인 성격은 매스·미디어로부터 시민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데에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유럽대륙에서의 반론권제도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실에 관한 보도뿐 아니라 논평이나 비판 등, 의견내지

가치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론을 인정하는 제도로, 프랑스법 및 이를 도입한 벨기에법, 이탈리아법 등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사실의 보도에 국한하여 반론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독일의 각 주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 엄격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발전시켜온 한편, 언론의 자유, 특히 신문의 자유를 중시하여 왔기 때문에, 미국의 극히 소수의 주법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하에서도 매스·미디어의 대형화 독점화와 함께, 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언론·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이른바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의 주장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고, 특히 방송의 분야에서는 반론의 권리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론권을 넓은 의미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한 내용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의 보도가 아니라 주로 의견 내지 공공적 쟁점을 중심으로 반론권론이 전개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주로 서독 각주의 출판법에서 규정하는 반론권 조항을 모범으로 하여 여기에 부분적으로 변형을 가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정정보도청구제도에 따른 중재신청사례를 검토하여 본 다음 미국 및 일본에서의 반론권문제의 현황과 대표적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데에 그 본질이 있고 언론의 다원성 확보라는 새로운 현대 차원의 반론권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반론권이 아직 법제화되고 있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논의를 정토하여 보는 것은 해석론으로서나 입법론으로서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 2. 우리나라의 경우

### (1) 개관

우리 나라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제도의 특징 내지 성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실적 주장」(동법 제 49 조)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만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논평이나 비판 등의 의견 내지 가치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개인의 인격적 법익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독점화된 현대매스컴에 있어서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스·미디어에의 액세스권으로서의 성질은 희박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점에서 용어상으로도 우리의 제도는 「반론권」이라기 보다는 「반박권」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만지 않은가 생각된다. 둘째, 보도된 사실적 주장이나 여기에 대한반박이 진실한

것이냐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실제적 진실의 확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제도의 중점이 개인에 대하여 신속한 반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언론측과 개인간에 평 균을 이루기 위한 데에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에 의하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제 49E 3 항 단서)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예외사유를 확장하여 해석·적용한다면 제도 본래의 의미가 크게 상실될 것이다. 셋째,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제도로써,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를 혼란을 줄이고 언론활동에 대한 충격이나 피해자의 권리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후술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넷째, 정정보도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되어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의 거부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 (2) 언론중재신청사례의 검토

가. 언론기본법의 규정 (제 50 조)에 따라 1981년 3월 31일에 발족한 언론중재위원회는 4월 29일에 업무를 개시한 이래 81년 12월말까지 총 24건(피신청대상 언론사의 수로 보면 44건)을 접수, 처리하였다. 82년에 들어 와서는 4월 6일까지 총 7건(피신청대상 언론사의 수로도 7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아직 짧은 시행기간의 결과를 가지고 평을 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되겠으나 단편적이거나 몇 가지 구체적 사례별 검토에 앞서 전체적으로 보아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재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적다는 점이다. 81년도 언론사별 사례 44건 중에 합의 9건(20.5%), 불성립 12건(27.2%) 취하 20건(45.5%), 기각 1건(2.3%), 각하 2건(4.5%)으로 나타나 있고, 82년 4월 6일까지의 7건 중에는 합의 2건, 불성립 1건, 취하 3건, 각하 1건으로 되어 있다. 합의 성립의 율이 이처럼 낮다는 것은 중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취하의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취하의 원인이 대부분 피신청인의 막후 접촉에 의한 것 (81년도 경우 취하 20건 중에서 16건, 82년도 4월 6일까지 취하 3건 모두)임을 볼 때, 이는 중재의 절차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를 사실상 사전에 봉쇄하는 장으로서 기능함을 말해준다고 들이 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조차 그 합의의 내용은 대체로 정정보도청구권이 실현되는 경우의 내용보다 미약한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예컨대 81 서울 중재 5 및 81 부산중재 2 참조) 중재절차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중재절차는 피해자에게 시간과 노력의 면에서 번거로움을 줄 뿐,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단

언론사에 정정보도의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면 바로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위원회에 구동력있는 재결권을 부여하든가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의 방안을 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편익을 위하여 간역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재신청기간이 짧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일단 언론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된 공표 후 14일 이내에 언론사에 청구를 하고 언론사에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신청을 해야 하며, 직접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 제 49 조 1 항, 제 50 조 4 항). 이것은 프랑스법에서 기사의 공표 후 1년 이내에 언론사에 반론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래 3개월 정도로 단축하자는 비판이 있다고 한다), 1961년의 벨기에법에서는 3개월로 하고 있으며, 서독에서도 바덴·뷔르템베르그주 법의 경우에 3개월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너무 짧다고 볼 것이다. 81년도 신청사례 중 2건 및 82년도 사례 중 1건의 각하는 신청기간의 도과로 인한 것이다(언론중재규칙 제 6 조 2 항 참조). 기본적으로 중재신청의 건수가 매우 적다는 것은 이 제도의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외에도 신청기간이 짧은 것도 요인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셋째, 언론법시행령 제 41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부는 일정한 경우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법 제 51 조 1 항에서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신청을 할 수 없고,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예」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각의 경우가 법제 51 조 1 항에서 말하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명백하지 않다. 만일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중재위원회에 중재의 기능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로 되어 문제이다. 특히 기각의 사유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더욱 문제이다. 후술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한 일관되지 못한 예가 발견된다. 넷째, 법 제 50 조 8 항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직권에 의해 심의하고 시정권고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재의 기능을 넘는 권한이다. 아직 실제로 행사된 예는 없으나 이 권한은 중재신청기간의 도과 등의 경우에 국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주로 이론적 관점에서,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광고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례 「81 서울중재 91 및 「81 서울중재 10」에서는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앞의 사례에서는 신청의 일부는 기간의 도과로 각하되고 일부는 중재가 불성립되었으며, 뒤의 사례에서는 중재가 불성립되었다. 이 사례들에서 피신청인들은 문제된 광고가 유료광고라는 사유를 거부의 이유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료이든 무료이든, 또 그 성격이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의견광고 또는 공고적 성질의 광고)이든, 광고의 내용 중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프랑스법에서도 판례·통설은 기사의 내용이 논평이든, 보도이든, 광고이든 불문하고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광고는 광고주의 사적인 주장만이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언론사도 선량한 권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실만이 아니라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권을 인정하는 제도의 경우, 의견광고에 있어서 의견에 대한 반론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언론사가 광고주의 언론의 자유를 우선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특별한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는 고려될 여지가 없다. 둘째, 역사적 사실에 관한 보도의 문제이다. 사례 중에는 이에 관한 것이 3건 있는데, 「81 서울중재 11」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하였고, 「81 서울중재 4」의 경우에는 기각되었으며, 「81 서울중재 111」의 경우에는 중재불성립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 우선 지적할 것은, 동일한 성질의 문제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의 처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81 서울중재 41」의 경우, 고구려의 영역에 관한 강연내용을 보도한 데 대하여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학술단체에서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중재부는 『역사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니, 신청인 학회가 보도의 정성을 신청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81 서울중재 11」의 경우, 1905년 당시 일본정부의 각의에서 독도취득의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중재가 신청되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중재부처 기각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불성립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똑같이 역사적 사실의 진부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문제된 사례에서 한쪽에서는 기각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법원에 대한 정정보도신청의 요건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는 기각과 불성립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역사적 사실에 관한 정보는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해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해석론으로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입법론으로서는 정보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학문적 견해를 비롯, 의견에 관한 반론권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사례 중에는 공공기관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 몇몇 발견되는데(예컨대 농협에 관한 「81 서울중재 181」, 또는 한국공연윤리위원회에 관한 2 서울중재 11),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다. 유명한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New York Times v. Sullivan)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법리 -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또는 진위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는 법리 - 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각한다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지 않으나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이와는 역으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그렇게 어렵게 한다면, 정정보도청구만은 널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는 일반론으로서 보다는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언론상황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는 가급적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 3. 미국의 경우

#### (1) 개관

미국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요구는 먼저 방송미디어에 대한 반론권의 형태로 제기되었고, 또한 일정한 실현을 보았다. 1969년의 레드 라이온 사건(Red Lion)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공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 공공적인 중요성을 갖는 쟁점에 관하여 대립하는 제견해에 대해 토론 위한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과 이때에 공평한 취급이 이루어질 것을 방송사업자에게 의무지우는 프로그램기준-및, 동 원칙에 근거한 이른바 Personal attack rule-방송을 통하여 공격을 받은 개인이나 그룹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FCC(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의 합헌법을 인정하였다. 특히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들 원칙의 합헌성을 단순히 방송주파수의 유한성이나 희소성이라는 전통적인 근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상이나 경험에의 적절한 액세스를 받을 공중의 권리」에 의거하여 지지한 점에선 주목되었다. 공정의 원칙에 의거한 반론방송의 요구는 사회·정치적 쟁점만 국한되지 않았다, 레드·라이온사건(Red Lion)보다 1년 전의 반즈하프 사건(Banzhaf)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담배광고에 대한 반론방송의 요구를 지지하였다. 뉴욕의 변호사 반즈하프가 공평의 원칙을 담배광고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FCC에 요청한데 대해 FCC는 재결하기를, 담배광고를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금연하도록 경고하는 전언에 무료로 방송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방송사업자는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하였으나 동법원은 FC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과 상기 레드·라이온 판결을 계기로 이후, 자동차 가솔린 등 담배 이외의 상품광고, 정부의 군대모집광고, 대통령의 TV 연설 등에 대해서까지 반론방송의 요구가 확대, 속출하였다. 그러나 반론권을 비롯한 액세스권의 급격한 전개는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론의 입장에서 방송의 자유를 주장하는 방송사업자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고, 1973년 연방대법원이 CBS 방송국 대 DNC 사건(CBS v. DNC)에서 의견광고방송요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또한 FCC도 1974년 5월, 공평의 원칙을 재검토한 보고서 속에서 동 원칙의 확대적용에 제한을 간함으로써 방송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에 한계를 설정하였다. 한편, 인쇄미디어인 신문의 경우, 반론권을 포함하여 액세스권 일반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다음에 보는 토니로사건(Tornillo)은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등에 대해서는 기왕의 발표·연구에 미루기로 한다.)

## (2) 판례 : 신문논설과 반론권 (Miami Herald Pub, Co. v. Tornillo 사건)

### 가. 사실의 개요

플로리다주의 선거법에 의하면, 모든 공직선거에서 신문에 의해 그 인격이나 경력 등에 관해 공격을 받은 후보자는 이에 대한 반론문의 무료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반론권 규정은 1913년에 제정되었으나, 그 이래로 이에 근거한 반론권 행사가 거의 없었다. 본건 이전에 법원에서 문제된 것은 1972년의 스테이트 대 뉴스·저널·코퍼레이션 사건 (State v. News Journal Corp.)이 유일한 예이며, 이 사건에서 주법원은 반론권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본건에서 데이드(Dade)군 교원연합회장인 토니로는 주하원의원의 민주당후보의 지명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마이애미 헤럴드(Miami Herald)지는 그 논설을 통해, 토니로가 공립학교교원의 파업을 금지하는 주법에 위반하여 파업을 주도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그를 법파괴자요 「짜르(czar)」라고 부르면서, 유권자들이 그를 선출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이에 토니로는 마이애미·헤럴드 지에 반론문 게재의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상기 반론권 규정에 의거, 주헌법에 반론문 게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순회법원은 반론권 규정이 막연하다(vague)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동규정이 허용할 수 없을 만큼 막연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주로 1971년 오젠브룸 대메트로 미디어 사건(Rosenbloom v. Metro media)에서의 대법원판결에 의거, 6 : 1의 판결로 반론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로젠브룸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공의 쟁점」(public issues)에 관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사건으로서 악세스권을 인정하는 법을 판정하는 것이 요람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마이애미 헤럴드지는 주 대법원판결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나. 판시

버거(Burger) 대법원장의 판결의견을 통하여 판사전원의 일치로, 플로리다주 반론권 규정이 수정 헌법 1 조(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아, 주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버거 대법원은 피상고인측의 반론권론을 장황히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러한 주장(반론권 지지의 주장)에 아무리 많은 타당성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강제가능한 악세스권과 같은 구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것이든 합의에 의한 것이든 어떤 기구가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만일 그것이 정부의 의한 강제라면, 이는 수정 제 1 조의 명문규정 및 동 규정에 관하여 다년간 전개되어 온 법원의 해석과 직접 충돌을 가져온다.』 『선례에 의하면 「이성」이 게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을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책임있는 언론은 물론 바람직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언론의 책임은

헌법이 명하는 바는 아니며, 다른 많은 덕목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입법화될 수는 없다」 『악세스권법의 적용범위내에 있다고 주장될 수 있는 뉴스나 평론을 게재한 신문에 불이익(반론문의 게재를 위한 여분의 비용 및 지면의 할당 등)이 가해지게 된다면, 편집자들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결론짓게 될 것이며, 플로리다 주법하에서 정치기사나 선거기사는 둔화 또는 축소될 것이다. 『(가령 반론권법으로 인하여 신문이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플로리다주법은 편집자의 기능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 제 1 조의 위반을 면할 수 없다. 신문은 뉴스·논평 및 광고를 위한 수동적인 용기나 도관 이상의 것이다』 브레난 (Brennan)판사는 렌퀴스트(Renquist) 판사가 가담한 동지 의견(concurring opinion)속에서 위의 판결이 반론권법만에 대한 위헌판결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취소문의 강제를 규정하는 취소법(retraction statutes)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판결에 동의한다고 말하였다.

#### 다. 평석

위의 연방대법원 판결은 반론권지지론의 타당성을 반드시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반론권이 목표로 하는 언론의 책임성은 헌법이 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신문의 자유 내지 편집의 자유를 보다 우선시키고 있다. 즉 반론권의 입법화가 신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가져오는 점에서 위헌으로 본 것이다. (미국에서 반론권법을 가지고 있는 주는 그밖에 네바다주, 미시시피주 등 극소수에 국한되며, 그 헌법판단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토너로 사건이 처음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허버드·로우 리뷰(Harvard Law Review)의 평자는 이 판결이 신문에 대한 악세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특히 브레난판사의 의견이 주목되고 있다. 동 판사는 전기 로젠브룸사건의 판결의견을 통하여, 공공의 쟁점에 관한 명예훼손의 구제책으로서 반론권법의 필요성은 직시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도 토너로 사건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고 있다. 결국 그는 일반적으로 반론권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의 경우에 국한하여 한정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반론권법의 합헌성은 후술하는 일본판례(산케이신문 사건)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반론권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도 전면적인 반대도 아닌 중도적 입장은 예일대학의 에머슨(T. I. Emerson)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표명되고 있다. 특히 콜럼비아대학의 슈미트(D. Schmidt) 교수는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목표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한편, (편집의) 자치라는 가치에 대한 위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자치와 다양성의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발상과 관련하여 도나휴(Donoghue)교수는 언론인들의 자발적인 언론강령을 통하여 반론권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특히 신문의 정치적 의견광고에 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법률시안이 만들어진 바 있는데, 주대법원은 1973년에 그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통하여 이 시안이 위헌이라고 보았다. 동 시안에서는 신문이 특정후보의 유료 정치광고를 실은 경우, 모든 바른 후보에 대해서도 유료의 정치광고를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선거에서의 특정한 쟁점에 관하여 어느 입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유료 정치광고를 실은 경우, 바른 입장에 대해서는 유료의 정치광고를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후술하는 일본판례 (산케이신문 사건)에서는 신문이 정치적 의견광고를 실은 경우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유료」 의견광고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토니로사건 이후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 사건에서의 연방대법원 판결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드웨스트 · 비디오 대 FCC 사건[Midwest Video v. FCC (Midwest Video II)]에서 연방 제 8 순회항소법원은 유선 TV에 대한 일반의 일정한 액세스를 인정한 FCC(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을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인쇄미디어뿐 아니라 전파미디어에서도 토니로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듯한 기미를 보여 주었다. 또한 퍼슨 대 뉴욕·포스트 사건(Person v. New York Post)에서 연방지방법원(및 그 결을 그대로 인정한 연방항소법원)은 일정한 상업적 광고의 게재청구를 기각하면서, 신문에의 광고게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의견광고나 상업적 광고나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 4. 일본의 경우

##### (1) 개관 : 관련 법규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반론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대체로 1970 년대에 들어와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학제에서의 연구활동이나 또는 방송에 관한 시민활동을 통하여 이른 바 「악세스권」의 일내용으로서 반론권의 개념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현단계에서나마 기재의 법규정의 재해석을 통하여 반론권 개념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나 반론권과 관련되는 법규정은 특히 방송관계법규에서 발견된다. 반론방송요구의 법적 한계조항으로 흔히 원용되고 있는 것은 「방송법」 제 44 조 3 항이다. 동조항은 「일본방송협회」(약칭 HNK)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동제 2 호), 및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논점을 명백히 할 것」(동 제 4 호)을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방송법 제 51 조에 의하여 민간방송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엄격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논리규범적 성격을 가질 뿐이라는 해설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유선텔레비전방송법」에서는 방송법 제 44 조

3 항의 위반에 대하여 「우정대신」이 업무정지명령을 명할 수 있고, 또 그 명령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 17 · 25 · 34 조)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법 제 4 조 1 항에서 「방송사업자(……)가 진실하지 않은 사항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그 방송에 의해 권리의 침해 받은 본인 또는 그 직접 관계인으로부터 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방송을 한 사항이 진실하지 않은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진실하지 않음이 판명된 때에는, 판명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그 방송을 한 방송설비와 동등한 방송설비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취소의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권리로서 확립되어있는 것이 아닌 점에서 엄격한 의미의 반론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반론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정정방송제도는 방송법 자체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기조항에 근거한 청구가 실제로 행사된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NHK가 1973년 4월 24일, 국제소동의 용의자체포에 관한 뉴스에서 용의자의 소속을 잘못 전하여 정정방송을 한 것이 드문 예의 하나이다. 이것은 민간방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근래에 주목되었던 경우로는, 1977년 1월 21일 NET 계의 「ANN 뉴스레터」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문제에 관하여 정정방송을 한 예가 있다. 그 밖에, 반론방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방송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공직후보자방송제도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 150 조에 의하면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 및 도도부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공직의 후보자는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활동의 기간 중,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의 방송설비에 의해, 공익을 위하여 그 정견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사업자는 그 정견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이를 그대로 방송하지 않으면 안된다」(동조 1 항)고 규정하고, 이어서 이러한 「정견방송」에 있어서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해 동일한 방송설비를 사용하고 동일시간을 주는 등 동등한 편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동조 2 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에서도 「협회(NHK)가 공선에 의한 공직의 후보자에게 정견방송, 기타 선거운동에 관한 방송을 시킨 경우에, 그 선거에 있어 다른 후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동등한 요건으로 방송하지 않으면 안된다」(동 제 45 조)고 규정하고, 민간방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며 취지의 규정을 두어 「·, 요금을 징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동등한 요건으로 방송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정견방송 또는 후보자방송제도는 미국에서의 이른바 「등간(equal time)」 원칙과 동일한 취지의 것으로, 반론권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문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신문지법」에서 정오권 · 반박권의 규정을 두었으나 동법은 1949년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다만 근래에 민법의 규정을 근거로 일종의 반론권제도를 법해석의 방법을 통해 도입하려는 의논이 주목된다. 일본민법 제 723 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 재판소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래 법원은 「적당한

처분」으로서 사과광고의 게재 등을 명하여 왔다. 그런데 상기 조항의 「적당한 처분」이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반론문이나 반론광고의 게재 또는 방송을 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매스·미디어측의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러한 해석을 부인하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다수학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이른바 「공산당 대 산케이신문」 사건의 동경지방법판소 판결 가운데에서도 논급되어 있으며, 긍정설의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다.

## (2) 사례

위에서는 주로 법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법제도를 떠나 반론의 요구가 교섭이나 시민운동을 통하여 실제로 실현되는 예가 특히 70년대 이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그 대표적인 몇 사례를 보기로 한다.

가. 1971년 10월, 9개의 전력회사가 스폰서로 된 「원자력발전은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이 동경 12채널에서 방송되었는데, 그 내용이 일방적이라고 하여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단체가 방송국에 항의하였다. 그 결과 제 2회 방송의 전일인 동년 10월 26일, 일종의 반론방송협정이 성립되는데, 그 중심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안전 PR 프로그램으로 과학적인 정확성을 결하고 있다는 판결이 있음을 고려하여, 반대의 데이터를 검토한 다음에 반대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나. 1978년 5월 1일, 관서지역을 커버하는 「라디오 관서」는 헌법주간과 관련한 프로그램인 「헌법을 생각한다」에서 「桑野」 고베지검 검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그 인터뷰 가운데 桑野검사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답하여, 변호인없는 재판특별법안과 원아가 정화조에서 죽은 甲山사건의 재수사, 보모의 재체포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것은 모두 헌법상 하등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라디오 관서노동조합이 항의를 하고, 또 兵庫현 민주건설가협회 등에서도 조사에 나섰는데, 방송국 측은 동년 5월 14일, 『공평을 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금후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론을 방송하겠다』고

말하고』 이어 5월 25일, 같은 시간대의 「와이드·와이드 관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고베번호사회 부회장의 반론방송을 내보냈다.

다. 1978년 6월 6일, 일본 텔레비전의 『竹村健一의 세상강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인 竹村씨가 일본사회당의 방위정책에 관하여 말하면서, 「사회당은 바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당은 방송국에 정식으로 항의하였고, 그 결과, 8일의 프로그램에서 「石橋」 전 서기장이 나와 당의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어 7월 6일에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회자로 등장한 「加瀬英明」씨가 방일중이던 베트남 외무차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등, 공산당은 폭력을 사용한다고 말한 데 대해, 공산당은 방송국에 정정,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8월 3일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加瀬씨가 출연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건은 해결되었다.

### (3) 판례 신문지상의 의견광고와 반론권 (이른바 「공산당 대 산케이신문」 사건)

근래 일본에서 반론권에 관한 문제가 소송으로 문제된 대표적 사건으로 「공산당 대 산케이신문」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특히 이른바 「의견광고」와 관련한 반론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여러 관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가. 사실의 개요

1973년 12월 2일, 피고인 산업경제신문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자유민주당을 광고주로 하는 의견광고를 게재, 반포하였다. 이 의견광고의 내용이 원고인 공산당을 지목하여 그 당강령과 동당의 민주연합정부강령과의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공산당의 주장을 왜곡하여 비방·중상하는 것이며, 국민들 사이에 공산당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공산당을 이에 대해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중상과 공격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한 피고의 게재자로서의 책임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동일한 스페이스의 반론문을 산케이신문지상에 무료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와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교섭은 결렬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본건 광고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여 그 손해회복의 수단으로서 반론문의 무료게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동경지방법판소는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여 신청각하의 결정을 내렸다

(동경지결 소화 49·5·14). 이에 본안 소송으로서 동일한 스페이스의 반론문의 무료게재를 구하는 본건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나. 판시

청구 기각 (항소)① 『헌법 제 21 조에 의한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어떤 언론의 대상으로 되는 상대방의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이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는 개념상 반론의 자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고가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산케이신문을 이용한 소외 자민당의 공격에 대하여 동지상의 반론 「광고」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반론하는 권리를 갖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 부담을 지우는 반론의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위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 제 21 조에 근거한 반론문게재청구권은 본건 광고가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라는 위법성을 갖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 피고에게 아무 위법성도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 근대법의대원칙이며, 본건의 경우로 말하면, 위법한 사태에 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는 상품인 원고스페이스의 출연을 요구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반론의 자유를 갖는 것이며, 피고가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양태에 따라 바르기는 하지만) 위법이라고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이러한 형태로 원고의 반론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 보호이며, 누구에게 대해 적극적으로 작위를 구하는 근거(특히 민사상의 청구권)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불법행위 등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후처리는 별도로 하고, 신문은 본래 상품인 스페이스의 출연을 그 뜻에 반하여 강제될 것은 아니며, 이러한 강제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법률의 명문에 의하여 분명히 요건을 명백히 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이러한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재산권(여기에서는 신문의 지면)을 침해함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② 『원고는 인격권침해에 관해서는 불법행위상의 금전배상·회복처분에 그치지 않고,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유지청구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법원은 조리에서 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 및 조리의 존재와 작용에 의하여 원고의 반론문의 게재의 필요성 및 정당성이 승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계속하는 위법한 침해행위의 배제·정지를 구하는 것이며, 본건 광고처럼 과거의 1 회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자세에 대한 논쟁·비판이 당해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a) 이것이 고의, 또는 진위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행하여진 것인가 아닌가, 및 (b) 그

내용이나 표현 현저히 저속 내지 모욕·비방·중상적이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시인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나아가, 일반적으로 타인을 비판·공격한 논평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건 광고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본건 반론문의 게재를 구하는 부분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평석

위의 판결은 원고의 반론권의 주장을 그 근거와 관련하여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각각 이를 부정하고 있다. 즉, ①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에 근거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법론일 뿐이라고 보고 있고, ② 인격권과 조리에 근거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③ 불법행위론에 근거한 주장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위의 ①에 관한 부분에서 판결은 「피고에게 아무 위헌성도, 경우에는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 근대법의 대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근대법의 대원칙」이 판결에서 반론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본적 전제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근대법의 대원칙, 즉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론의 틀 속에서 반론권의 문제를 다루려는 태도이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반론권이 성립된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직접적으로 반론권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의 성부에 관한 것 이지만, 위의 ③의 부분에서 판결은 명예훼손 성부의 요건의 하나로, 「(a) 이것이 고의, 또는 진위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행하여진 것인가 아닌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에 관한 명예훼손의 성부의 기준으로서 1964년의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유명한 법리, 즉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법리를 원용한 것이다. 다만, 그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고 있는 점에서 (이 점은 상기 판시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위의 판결은 원고의 반론권 주장을 배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가적 의견을 통하여 한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반응도 보여주고 있다. 즉, 「당재판소로서는 반론권을 엄격한 요건하에 제도화하더라도 이를 헌법위반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반론권이 장래의 입법을 통하여 보장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일본민법 제 723 조의 「적당한 처분」에는 반론권의 게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을 통하여 반론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위의 민법해석에 대하여는 학자들간에 반론이 없지 않으나 다수론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사과광고라는 방법이 헌법상 양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헌론을 고려해보더라도 위의 판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5. 맺는말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반론권제도가 갖는 의미도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19세기 프랑스의 격정적인 정치논쟁의 분위기 속에서 생성된 반론권제도는 역사적으로 보아 주로 신문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신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히 유효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언론의 개인에 대한 침해는 주로 사생활에 관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데,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반론권제도는 대단히 무력한 방어수단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다.(예컨대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이른 바 여대생 박양피살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보도를 상기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반론권제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주로 미국에서나 논의되고 있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일종으로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즉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교제수단으로서 보다는 현대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대형화·집중화·독점화의 진행과 아울러 사상·의견·정보의 균질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해 사상·의견의 다양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 그것이 특히 주목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매스·미디어를 갖지 못한 시민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들려줄 권리」(the right to be heard)라는 곁에서 반론권 내지 액세스권의 현대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반론권은 어떠한 내용과 성질의 것이든 정신적 자유의 강령에의 국가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전제하는 것인 만큼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언론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한편, 자칫 언론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가져오기 쉽다. 결국 반론권에 대한 평가는 각국의 언론자유 발전의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언론상황 속에서 반론권제도가 갖는 의미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텍사스 대학(비교법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저술 : 미국헌법과 대외 문제 (저), 국가기밀과 언론의 자유 (논문) 외 다수

- 현재 송전대학교 법학과 교수